

금융상품중요사항설명

1.자료열람요구권

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,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
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2.위법계약해지권
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3.상품 관련 문의 및 분쟁절차 안내

이 상품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운영관리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부(02-3788-6617), 부산지점(051-463-8788), 대림지점(02-836-6815), 건대지점(02-3409-8900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요청이있는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5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또는

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예금성 상품의 구속행위 규제제도 안내

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등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인 경우 예금성 상품 가입 후 1 개월 이내 대출성 상품 계약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대출성 상품 계약 후 1 개월이내 예금성 상품 가입 포함)